

光州直轄市西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2年 11月
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2年 10月 22日
- 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2年 10月 28日
- 라. 最初上程日字 : 1992年 11月 3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2. 11. 3.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西區 總務局 總務課長)

가. 提案理由

- 現行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(보건소 의사)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통해 수당의 현실화를 기하고
-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처우 개선책으로 방범수당을 신설지급코자 함.

나. 主要骨子

○ 의료업무 수당인상

구 분	현 행	개 정	인 상 액	비 고
전 문 의	554,000원	609,000원	55,000원	
일 반 인	471,000원	518,000원	47,000원	

○ 방법 수당신설

-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에 방법수당 40,000원 지급
-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술방법 경력 연수에 따라 가산금 지급
(최하 8,000원 - 최고 100,000원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丁浩文)

- 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소 의사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지급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
- 방법원의 방법수당을 신설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	答 辯
○ 본조례가 개정되면 방법원 수혜대상자 수와 연간 예산 소요액?	(答辯者: 總務課長 李占守) ○ 서구청 관할 방법원수는 40명으로 1년미만 근무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혜대상자는 32명이고 연간 예산은 14,920천원이 필요합니다.

5. 討論要旨 :

6. 審査結果 :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.

7. 其他事項 :

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(안)

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

제1조【목적】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의료업무등의[○]수당】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: 【별표 1】의 지급 구분표
2.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: 【별표 2】의 지급 구분표

제3조【방법수당】 ① 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,000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【별표 3】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구분표

구분	전문 의	일반 의
갑 지 (특별시, 직할시, 시, 도 및 시, 구)	월 609,000원 이하	월 518,000원 이하

비 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 55호의규정에 의하여 보건 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 5조의 규정에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2]

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근무연수별 \ 등급 별	가 급	나 급
5 년 이 상	월 1,012,000 원 이하	월 673,000 원 이하
4 년 이 상	월 1,006,000 원 이하	월 667,000 원 이하
3 년 이 상	월 1,000,000 원 이하	월 661,000 원 이하
2 년 이 상	월 995,000 원 이하	월 656,000 원 이하
2 년 미 만	월 989,000 원 이하	월 650,000 원 이하

비 고 : 근무연수는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[별표 3]

방법 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

자 율 방 법 원 경 력	가 산 지 급 액	비 고
1년 이상 - 2년 미만	월 8,000원	
2년 이상 - 3년 미만	월 16,000원	
3년 이상 - 4년 미만	월 24,000원	
4년 이상 - 5년 미만	월 32,000원	
5년 이상 - 6년 미만	월 38,000원	
6년 이상 - 7년 미만	월 44,000원	
7년 이상 - 8년 미만	월 50,000원	
8년 이상 - 9년 미만	월 56,000원	
9년 이상 - 10년 미만	월 62,000원	
10년 이상 - 11년 미만	월 66,000원	
11년 이상 - 12년 미만	월 70,000원	
12년 이상 - 13년 미만	월 74,000원	
13년 이상 - 14년 미만	월 78,000원	
14년 이상 - 15년 미만	월 82,000원	
15년 이상 - 16년 미만	월 84,000원	
16년 이상 - 17년 미만	월 86,000원	
17년 이상 - 18년 미만	월 88,000원	
18년 이상 - 19년 미만	월 90,000원	
19년 이상 - 20년 미만	월 92,000원	
20년 이상 - 21년 미만	월 94,000원	
21년 이상 - 22년 미만	월 96,000원	
22년 이상 - 23년 미만	월 97,000원	
23년 이상 - 24년 미만	월 98,000원	
24년 이상 - 25년 미만	월 99,000원	
25년 이상	월 100,000원	

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신, 구 조문대조표

< 전 문 개 정 >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(이하"영"이라 한다)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중 일반직 의사,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(이하"영"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"공무원"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 2조(의료업무등의 수당) 영 "별표9"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,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 <p>1. 일반직 의사 : [별표1]지급 구분표</p> <p>2. 전임전문직의사: [별표2]지급구분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직</p>	<p>제 2조(의료업무등의 수당) 영 "별표9"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 2조 제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: [별표1]의 지급구분표</p> <p>2.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: [별표2]의 지급구분표</p>
<p>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 3조(방법수당) ① 영 별표9 제 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 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 연수에 따라 [별표3]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직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